

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

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』 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전자증권 시행일('19.9.16)부터 소유중인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8.2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, '19.9.11(시행일 직전 영업일)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리인)에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,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※ 단, 예탁 마감기한은 각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에 확인 바랍니다.
- 당사는 '19.9.11(시행일 직전 영업일)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(전자등록기관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19년 6월 13일

 LG상사 대표이사 CEO 윤춘성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